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9-5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법적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고 있음을 규정함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3조)

- 1) 3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시행
- 2)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라. 정책과제의 추진, 군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자치분권협회의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1조)

- 1) 위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
- 2) 기능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 3)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위원
- 4) 임기는 2년
- 5) 그 밖에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를 정함

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8,690천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군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거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관계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행정과장 신 영 수